|  |  |  |
| --- | --- | --- |
| **증치세 개혁 유관 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공고 2019년 제39호  당 중앙, 국무원 정책의 안배를 철저히 관철시켜 이행하고, 증치세 실질적 감세를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증치세 개혁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증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가 증치세 과세 판매행위를 하거나 또는 화물을 수입할 시 기존에 16% 세율을 적용한 경우, 13% 세율로 조정한다. 기존에 10% 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9% 세율로 조정한다.  2. 납세자가 농산품을 구매할 시 기존에 10% 공제율을 적용한 경우, 공제율을 9%로 조정한다. 납세자가13% 세율 화물의 농산품을 생산 또는 위탁가공용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10%의 공제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3. 기존에 16%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환급률이 16%인 수출 화물용역은 수출 환급률을 13%로 조정한다. 기존에 10%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환급률이 10%인 수출 화물 및 국경간 과세행위는 수출 환급률을 9%로 조정한다.  2019년 6월 30일 전(2019년 4월 1일 전 포함), 납세자가 전 관(款)과 관련된 화물용역 및 국경간 과세행위를 수출하여 증치세 면세환급 방법을 적용할 경우, 구매 시 이미 조정 전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조정 전의 수출 환급률을 이행하고, 구입시 이미 조정 후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 조정 후의 수출 환급률을 이행한다. 증치세 면세 공제 환급 방법을 적용할 경우, 조정 전의 수출 환급률을 이행하고, 면세 공제 환급 계산 시, 수출 환급률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세율과 수출 환급률 간의 차를 0으로 간주하여 면세 공제 환급 계산과 연관 지어 적용한다.  수출 퇴세률의 이행기간 및 화물용역 수출 및 국경간 과세행위가 발생한 기간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수출할 화물용역(보세구 및 보세구를 거쳐 수출하는 것 제외)을 해관에 신고하는 경우 해관 수출 신고서에 명기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수출할 화물용역 및 국경간 과세행위를 해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출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보세구 및 보세구를 거쳐 수출하는 화물은 화물 출국 시에 해관이 발급한 출국 화물 비안 명세서에 명기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13% 세율을 적용하는 국외 여행자가 구매한 출국 환급 물품의 환급률은 11%이다. 9% 세율을 적용하는 국외 여행자가 구매한 출국 환급 물품의 환급률은 8%이다.  2019년 6월 30일 전, 조정 전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정 전의 환급률로 집행한다. 조정 후의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정 후의 환급률로 집행한다.  환급률의 이행기간은 환급 물품 증치세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5. 2019년 4월 1일부터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징수 시범시행 유관 사항의 규정> (재세[2016]36호 발표)제1조 제4항 제1점, 제2조 제1항 제1점은 이행을 중단하고, 납세자는 부동산 또는 건설중인 부동산을 취득한 매입세액은 더 이상 2년으로 나누어 공제하지 않는다. 이전에 상술한 규정에 따라 공제 완료가 아직 되지 않고 공제 대기 매입세액은 2019년 4월 세금 귀속기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납세자가 국내 여객 운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허가한다.  6.1 납세자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임시로 아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확정한다.  6.1.1 증치세 전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세액이다.  6.1.2 여행자 신분 정보가 명기된 항공 운수 전자 티켓을 받은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항공 여객 운수 매입세액 = (표 값 + 유류할증료) ÷（1+9%）×9 %  6.1.3 여행자 신분 정보가 명기된 철도 승차권을 받은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철도 여객 운수 매입세액 = 액면금액 ÷（1+9%）× 9%  6.1.4 여행자 정보가 명기된 고속도로, 수로 등 기타 승차권을 받은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고속도로 및 수로 등 기타 여객 운송 매입세액 = 액면금액 ÷（1+3%）× 3%  6.2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징수 시범시행 실시방법> (재세[2016] 36호 발표) 제27조 제6항과 <영업세의 증치세 시범시행 유관 사항의 규정> (재세[2016] 36호 발표) 제2조 제1항 제5점 중 ‘구매한 여객 운송 서비스, 대출 서비스, 요식 서비스, 거주자 일상 서비스와 여가 서비스’는 ‘매입한 대출 서비스, 요식 서비스, 거주자 일상 서비스와 여가 서비스’로 수정한다.  7.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산 및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10%를 추가해 납부세액(이하 추가공제정책)을 공제 받도록 허가한다.  7.1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생산 및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우정 서비스, 전신 서비스, 현대 서비스, 생활 서비스(이하 4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4대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주석> (재세[2016] 36호 발표)에 따라 이행한다.  2019년 3월 31일 전 설립한 납세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기간의 매출액(경영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실제경영 기간에 따른 매출액)이 상술한 규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2019년 4월 1일부터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한다.  2019년 4월 1일 후 설립한 납세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간 매출액이 상술한 규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일반납세자로 등기한 날로부터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추가공제정책 적용을 확정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조정하지 않고, 이후연도의 적용여부는 전년도 매출액 계산을 근거로 확정한다.  납세자는 계상할 수 있으나 계상하지 않은 추가공제액은 추가공제정책 적용을 확정한 당기에 한꺼번에 계상할 수 있다.  7.2 납세자는 당기 공제가능 매입세액 10%에 당기 추가공제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액을 계상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전출할 경우, 매입세액 전출 당기에 상응하는 추가공제액을 감면 조정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기 계상 추가공제액 = 당기 공제가능 매입세액 × 10%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 = 전기 말 추가공제액 잔액 + 당기 계상 추가공제액 – 당기 감면 조정 추가공제액  7.3 납세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방법으로 납부세액(이하 공제 전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아래 상황을 구분하여 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  7.3.1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일 경우,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 전액은 다음 기(期)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7.3.2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보다 크고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보다 클 경우,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 전액은 감면 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7.3.3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보다 크나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은 납부세액 0까지 공제한다. 공제가 끝나지 않은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은 다음 기(期)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한다.  7.4 납세자가 화물용역을 수출하고 국경간 과세행위를 행하고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상응하는 매입세액은 추가공제액을 계상할 수 없다.  납세자이면서 화물용역을 수출하고 국경간 과세행위를 행하는 자가 추가공제액을 계상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추가공제액을 계상할 수 없는 매입세액 = 당기 구분할 수 없는 총 매입세액 X 당기 화물용역 수출과 국경간 과세행위로 발생한 매출액 ÷ 당기 총 매출액  7.5 납세자는 스스로 추가공제액의 계상, 공제, 감면 조정, 잔액 등 변동 상황을 계산하여야 한다. 추가공제정책 적용 또는 추가공제액을 허위로 높여 편취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6 추가공제정책 이행 종료 후, 납세자는 더 이상 추가공제액을 계상하지 않는다. 남은 추가공제액은 공제를 중단한다.  8. 2019년 4월 1일부터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제도를 시범시행 한다.  8.1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증량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8.1.1 2019년 4월 세금 귀속기간부터 연속 6개월 (분기별 납세일 경우, 연속 2분기) 증량공제세액이 모두 0보다 크고 6개월째 증량공제세액이 50만 위안 보다 낮지 않은 경우  8.1.2 납세신용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인 경우  8.1.3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공제 환급, 수출 환급 편취 또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정황이 없는 경우  8.1.4 환급 신청 전 36개월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8.1.5 2019년 4월 1일부터 즉시징수 즉시환급 및 선징수 후환급 정책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  8.2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증량공제세액은 2019년 3월말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기말공제세액을 의미한다.  8.3 납세자가 당기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공제세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환급이 승인된 증량공제세액 = 증량공제세액 × 매입세액 구성비 × 60%  매입세액 구성비는 2019년 4월부터 환급 신청 전 세금 귀속기간 내 이미 공제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자동차 판매 통일 세금계산서 포함), 해관 수입 증치세 전용 납부서, 납세 완납 증명에 명기된 증치세액이 같은 기간 전부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비중이다.  8.4 납세자는 증치세 납세신고 기간 내 주관세무기관에 환급공제세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8.5 납세자가 화물용역을 수출하고, 국경간 과세행위를 행하여 공제환급 방법을 적용 받는 경우, 공제환급을 처리한 후에도 여전히 본 공고 규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공제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세환급 방법을 적용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세액 환급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8.6 납세자가 환급한 공제세액을 받은 후에는 상응하는 당기공제세액을 감면 조정하여야 한다. 본 조 규정에 따라 재차 환급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속해서 주관세무기관에 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조 제8.1항 제8.1.1점에 규정된 연속 기간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8.7 매입세액 허위 증액, 허위 신고 또는 기타 편법 수단으로 공제환급액을 편취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편취한 환급액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8 환급한 증량공제세액의 중앙 및 지방 분담 체제는 별도로 통지한다.  9. 본 공고는 2019년 4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2019년 3월 20일 |  | **关于深化增值税改革有关**  **政策的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海关总署公告2019年第39号  为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推进增值税实质性减税，现将2019年增值税改革有关事项公告如下：  　　一、增值税一般纳税人（以下称纳税人）发生增值税应税销售行为或者进口货物，原适用16%税率的，税率调整为13%；原适用10%税率的，税率调整为9%。  二、纳税人购进农产品，原适用10%扣除率的，扣除率调整为9%。纳税人购进用于生产或者委托加工13%税率货物的农产品，按照10%的扣除率计算进项税额。  三、原适用16%税率且出口退税率为16%的出口货物劳务，出口退税率调整为13%;原适用10%税率且出口退税率为10%的出口货物、跨境应税行为，出口退税率调整为9%。  2019年6月30日前（含2019年4月1日前）,纳税人出口前款所涉货物劳务、发生前款所涉跨境应税行为，适用增值税免退税办法的,购进时已按调整前税率征收增值税的，执行调整前的出口退税率,购进时已按调整后税率征收增值税的，执行调整后的出口退税率；适用增值税免抵退税办法的,执行调整前的出口退税率,在计算免抵退税时，适用税率低于出口退税率的，适用税率与出口退税率之差视为零参与免抵退税计算。  出口退税率的执行时间及出口货物劳务、发生跨境应税行为的时间，按照以下规定执行：报关出口的货物劳务（保税区及经保税区出口除外），以海关出口报关单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非报关出口的货物劳务、跨境应税行为，以出口发票或普通发票的开具时间为准;保税区及经保税区出口的货物，以货物离境时海关出具的出境货物备案清单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  四、适用13%税率的境外旅客购物离境退税物品，退税率为11%；适用9%税率的境外旅客购物离境退税物品，退税率为8%。  2019年6月30日前，按调整前税率征收增值税的，执行调整前的退税率；按调整后税率征收增值税的，执行调整后的退税率。  退税率的执行时间，以退税物品增值税普通发票的开具日期为准。  五、自2019年4月1日起，《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财税〔2016〕36号印发）第一条第（四）项第1点、第二条第（一）项第1点停止执行，纳税人取得不动产或者不动产在建工程的进项税额不再分2年抵扣。此前按照上述规定尚未抵扣完毕的待抵扣进项税额，可自2019年4月税款所属期起从销项税额中抵扣。  六、纳税人购进国内旅客运输服务，其进项税额允许从销项税额中抵扣。  　　（一）纳税人未取得增值税专用发票的，暂按照以下规定确定进项税额：  　　1.取得增值税电子普通发票的，为发票上注明的税额；  　　2.取得注明旅客身份信息的航空运输电子客票行程单的，为按照下列公式计算进项税额：    航空旅客运输进项税额=（票价+燃油附加费）÷（1+9%）×9%  3.取得注明旅客身份信息的铁路车票的，为按照下列公式计算的进项税额：  铁路旅客运输进项税额=票面金额÷（1+9%）×9%  4.取得注明旅客身份信息的公路、水路等其他客票的，按照下列公式计算进项税额：  公路、水路等其他旅客运输进项税额=票面金额÷（1+3%）×3%  （二）《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财税〔2016〕36号印发）第二十七条第（六）项和《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财税〔2016〕36号印发）第二条第（一）项第5点中“购进的旅客运输服务、贷款服务、餐饮服务、居民日常服务和娱乐服务”修改为“购进的贷款服务、餐饮服务、居民日常服务和娱乐服务”。  七、自2019年4月1日至2021年12月31日，允许生产、生活性服务业纳税人按照当期可抵扣进项税额加计10%，抵减应纳税额（以下称加计抵减政策）。  　　（一）本公告所称生产、生活性服务业纳税人，是指提供邮政服务、电信服务、现代服务、生活服务（以下称四项服务）取得的销售额占全部销售额的比重超过50%的纳税人。四项服务的具体范围按照《销售服务、无形资产、不动产注释》（财税〔2016〕36号印发）执行。  2019年3月31日前设立的纳税人，自2018年4月至2019年3月期间的销售额(经营期不满12个月的，按照实际经营期的销售额)符合上述规定条件的，自2019年4月1日起适用加计抵减政策。  2019年4月1日后设立的纳税人，自设立之日起3个月的销售额符合上述规定条件的，自登记为一般纳税人之日起适用加计抵减政策。  纳税人确定适用加计抵减政策后，当年内不再调整，以后年度是否适用，根据上年度销售额计算确定。  纳税人可计提但未计提的加计抵减额，可在确定适用加计抵减政策当期一并计提。  （二）纳税人应按照当期可抵扣进项税额的10%计提当期加计抵减额。按照现行规定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的进项税额，不得计提加计抵减额；已计提加计抵减额的进项税额，按规定作进项税额转出的，应在进项税额转出当期，相应调减加计抵减额。计算公式如下：  当期计提加计抵减额=当期可抵扣进项税额×10%  当期可抵减加计抵减额=上期末加计抵减额余额+当期计提加计抵减额-当期调减加计抵减额  （三）纳税人应按照现行规定计算一般计税方法下的应纳税额（以下称抵减前的应纳税额）后，区分以下情形加计抵减：   1. 抵减前的应纳税额等于零的，当期可抵减加计抵减额全部结转下期抵减；     2.抵减前的应纳税额大于零，且大于当期可抵减加计抵减额的，当期可抵减加计抵减额全额从抵减前的应纳税额中抵减；    3.抵减前的应纳税额大于零，且小于或等于当期可抵减加计抵减额的，以当期可抵减加计抵减额抵减应纳税额至零。未抵减完的当期可抵减加计抵减额，结转下期继续抵减。    （四）纳税人出口货物劳务、发生跨境应税行为不适用加计抵减政策，其对应的进项税额不得计提加计抵减额。  纳税人兼营出口货物劳务、发生跨境应税行为且无法划分不得计提加计抵减额的进项税额,按照以下公式计算：  不得计提加计抵减额的进项税额＝当期无法划分的全部进项税额×当期出口货物劳务和发生跨境应税行为的销售额÷当期全部销售额  （五）纳税人应单独核算加计抵减额的计提、抵减、调减、结余等变动情况。骗取适用加计抵减政策或虚增加计抵减额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等有关规定处理。  （六）加计抵减政策执行到期后，纳税人不再计提加计抵减额，结余的加计抵减额停止抵减。  八、自2019年4月1日起，试行增值税期末留抵税额退税制度。  　　（一）同时符合以下条件的纳税人，可以向主管税务机关申请退还增量留抵税额：  　　1.自2019年4月税款所属期起，连续六个月（按季纳税的，连续两个季度）增量留抵税额均大于零，且第六个月增量留抵税额不低于50万元；     1. 纳税信用等级为A级或者B级；     3.申请退税前36个月未发生骗取留抵退税、出口退税或虚开增值税专用发票情形的；    4.申请退税前36个月未因偷税被税务机关处罚两次及以上的；    5.自2019年4月1日起未享受即征即退、先征后返（退）政策的。  （二）本公告所称增量留抵税额，是指与2019年3月底相比新增加的期末留抵税额。  （三）纳税人当期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按照以下公式计算：  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增量留抵税额×进项构成比例×60%  进项构成比例，为2019年4月至申请退税前一税款所属期内已抵扣的增值税专用发票（含税控机动车销售统一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解缴税款完税凭证注明的增值税额占同期全部已抵扣进项税额的比重。  （四）纳税人应在增值税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申请退还留抵税额。  （五）纳税人出口货物劳务、发生跨境应税行为，适用免抵退税办法的，办理免抵退税后，仍符合本公告规定条件的，可以申请退还留抵税额；适用免退税办法的，相关进项税额不得用于退还留抵税额。  （六）纳税人取得退还的留抵税额后，应相应调减当期留抵税额。按照本条规定再次满足退税条件的，可以继续向主管税务机关申请退还留抵税额，但本条第（一）项第1点规定的连续期间，不得重复计算。  （七）以虚增进项、虚假申报或其他欺骗手段，骗取留抵退税款的，由税务机关追缴其骗取的退税款，并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等有关规定处理。  （八）退还的增量留抵税额中央、地方分担机制另行通知。  　　九、本公告自2019年4月1日起执行。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海关总署  2019年3月20日 |